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주체 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6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
주체110(2021)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78호로 수정보충
주체111(2022)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44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6호로 수정보충

제1장 농장법의 기본

제1조 (농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 주의 농촌경리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농장의 정의)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이다.

제 3조 (농장의 임무)

국가로부터 받은 농업 생산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 하며 농장원들의 노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농장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농장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 (농장의 조직원칙)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나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제5조 (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 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며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 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7조 (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농장의 조직

제 8조 (농장조직의 요구)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9조 (농장조직신청)

농장을 나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장조직결정)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 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장의 등록신청)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와 사 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농장의 등록)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장에는 농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농장의 재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장등록증의 재발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반, 분조의 로력과 토지는 고착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농장의 기구조직)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 (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 의결정한다.

농장원총회는 분기에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 19조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조직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 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0조 (감사위원회)

감 사 위 원 회 는 농장관리사업 을 감독통제하는 기 관으로서 위 원장과 위 원들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 정 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제21조 (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경리와 부경리,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준 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검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줄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상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제22조 (농장의 경영권)

농장은 경영활동에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로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리용권 같은 경영권을 가진다.

농장은 국가가 부여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제23조 (농업생산계획의 작성, 실행)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 계획과 정보당수확고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에서 수입 이 높은 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재배할수 있다.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 정보당수확고계획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24조 (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시달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과 품종선택, 재배형식과 파종면적계획 등을 규정하고 해당 상급기관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며 영농공정별일정계획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울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제25조 (분조관리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조관리제안에서 생산조직과 총화)

분조관리제는 분조를 단위로 로력, 토지 등을 고정시키고 계획을 주며 그 수행정도에 따라 로력일을 평가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생산조직 형태이며 관리방법이다.

분조는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 27조 (포전분담)

농장은 농장원들에 대한 포전분담을 분조가 책임지고 농장원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조관리 제안에 서 유상유벌 적 용)

농장은 분조관리 제안에 서 농장원들에 대 한 유상유벌을 바로 적용하여 그들의 책 임 성과 적 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제29조 (분조관리제안에서의 담당책임제 실시)

농장은 분조관리 제안에 서 의 포전담당책임 제와 집 짐승무리별 담당책임 제를 비롯하여 러 가지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농장의 경영관리수준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높여야 한 다.

제30조 (농업생산물처리)

농장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알곡은 생산계획에서 농장자체조성곡계획을 제외하고 일정한 량을 국가알곡수매 계획에 따 라 수매하며 남은 알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 이 며 그 알곡을 먹 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 워 야 한 다.

제32조 (종자생산, 공급)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 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가물과 추위, 염기와 병해충 견딜 성이 강하며 비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를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 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 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건이에 이르기까지 모

든 영농 작업을 과학농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장은 벼강화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이며 두벌농사, 세벌농사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을 거두어야 한다.

농장은 영농물자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발양될수 있게 분조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하며 모기르기, 논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 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 업소,단체와 개 인에 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농업토지의 정리)

농장은 새땅찾기사업을 적극 진행하며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땀기논과 비탈밭, 빈 땅 같은것을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면서 부침땅면적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제 36조 (지력제고)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 필지 별로 세 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 개량을 계획 적으로 하며 유기 질비료와 생물활성비료, 미 생물비료, 생물농약 같은것을 많이 내 여 지 력을 높여 야 한다.

제37조 (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선 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 여야 한 다.

제38조 (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 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9조 (물원천의 확보)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농사에 쓸 물 원 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지와 저류지, 우물, 굴포, 졸짱 같은 물잡이시설을 건 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40조 (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 도기관과 관개수리 기관, 기 업소는 물사령체 계를 바로세우고 농업 생산에 필요 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밭관수를 정 확히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41조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며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 퇴하여 한다.

제42조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 해막이대책)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 건 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물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트랙또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정 상가동을 보장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설비를 사회적과제수행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 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45조 (부림소관리)

농장은 작업반별 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며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류용하거나 랑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 (로력관리)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높이는 원칙에서 비생산로력조절, 로동정량 제정 등 로력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하며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제48조 (로력일평가)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제49조 (자금리용 및 재정총화)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지표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없이 쓸수 있다.

은행기관은 농장에 필요한 영농물자구입자금을 저리자로 대부해주며 대부금에 대한 상환

기일을 농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만큼 연기시켜줄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득을 생산확대와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에 합리적으로 분 배, 리용하며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폐자금을 직 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기,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

농장은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담당별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참가시켜 알곡예상수확고판정에서 과학성,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 되게 하여야 한다.

알곡예상수확고판정 은 위성정보해석 기술에 의 한 수확고평 가, 포전에서 의 평뜨기같은 방법 으로 한다.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이 끝나면 판정자료와 그에 따르는 알곡소비처리안을 작성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결산분배총화를 농장원총회에서 하며 농장원들에게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노력 일에 의한 분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물 또는 화폐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3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의 계량은 해당 일군의 립회밑에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 은 계량수단으로 한다.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4조 (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 하 여야 한다.

제55조 (알곡수매계 획의 시 달)

국가계 획 기관, 중앙농업지 도기관은 국가적 인 알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 익을 다같이 보장하 는 원칙에서 국가알곡수매계획을 세워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 관은 국가로부터 시 달받은 수매계 획을 변경 시 켜 산하단위 와 농장에 시 달하는 행 위를 할수 없 다.

제56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업지 도기관과 농장은 국가알곡의무수매계 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 획을 어 김 없이 수 행하여야 한다.

농업 지 도기관과 농장, 작업 반은 자기 단위 에 시 달된 수매계 획을 수행 한다고 하면 서 계 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 작업반, 분조로부터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들여 수매계획 을 맞추거나 수 매계획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행 위, 국가알곡의무수

매 계 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 계 획을 수행하지 않고 영농물자구입과 사회적과제수행 등의 명목으로 농업생산물을 비법처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7조 (분배하고 남은 식량의 리용)

농장은 자체조성곡으로 조성 한 식 량가운데 서 분조의 국가알곡생 산계 획수행률과 농 장원가동 일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식량을 정해진 질서에 따라 리용하여야 한다.

제58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리용)

농장은 정해 진 범위안에서 알곡종자와 집 짐승먹 이같은것의 조성규모를 농장원총회에 서 토 의결정하고 조성, 리용하여야 한다.

제59조 (담당포전에서 초과생산한 알곡의 처리)

농장은 포전담당자가 담당포전에서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생산한 알곡을 전량 포전 담당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 60조 (농업생산물의 공급)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을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1조 (농장지표의 생산물에 대한 가격제정, 등록)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 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제62조 (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제 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4조 (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 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비닐박막,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 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등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수행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5조 (농장원생활조건보장)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 접적 담당자이 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과 식량, 땀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6조 (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업부문의 통계 종합체계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영농물자 공급과 소비, 영농공정수행, 알곡예상수확고와 수매, 농장원가동정형 등을 장악하고 농업생 산과 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관리정보체계를 개발, 도입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은 농장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장사업 에 대 한 감독통제 는 중앙농업 지도기관과 해 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은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8조 (연체료지불)

농장은 해당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 다.

제69조 (손해보상)

농장이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보장받고도 농업생산물수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달한 농업생산물몫에 해당하는 값을 국가에 납부시키며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고 농업생산 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되었거나 루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

다.

제70조 (중지, 원상복구)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 나 원상복구시 킨다.

제71조 (토지의 회수)

기관, 기 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 수한다.

제72조 (행정적책 임)

다음의 경 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경 고, 엄 중경 고처 벌 또는 3개 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 위로 제 기 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 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거나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분배를 하지 않고 평균주의를 하거나 담당포전의 농작물을 자의대로 처분하였을 경우
4.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켜 시달한 경우
5. 농업토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또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6.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피 해막이 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 에 피 해를 주었을 경우
9.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농장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사회적과제수행에 동원하도록 강요하였거나 그것을 집행하였을 경우
11.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허실,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2. 수매계획을 빗대고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 계획수행을 한 경우
13. 로력동원 등 사회적과제수행의 명목으로 알곡을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14.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거나 영농물자를 구입하거나 사취 또는 뒤흔로 제공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 하였을 경우

16. 농업생산계획과 국가알곡의무수매 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였을 경우

17.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9. 농장결산분배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결산분배가 늦어지게 하였거나 농장원 들의 식량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별 또는 강제,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73조 (형사적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